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Patent System of  
The Domestic Duty Free Shop



2018年 7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남 상 호

본 논문을 남상호의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1.2.1 연구의 범위 .....	1
1.2.2 연구의 방법 .....	2
1.3 연구의 구성 .....	3

## 2. 이론적 배경

2.1 보세구역제도 .....	5
2.1.1 보세구역 정의 .....	5
2.1.2 보세구역 종류 .....	5
2.2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	8
2.2.1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	8
2.2.2 해외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	11
2.2.3 해외 면세점 현황 .....	13
2.2.3.1 일본 .....	13
2.2.3.2 대만 .....	17
2.2.3.3 태국 .....	20

2.2.3.4 홍콩	22
2.2.3.5 마카오	23
2.2.3.6 중국	25
2.2.3.7 캄보디아	27
2.2.3.8 필리핀	27
2.2.3.9 싱가포르	28
2.2.3.10 인도네시아	30
2.2.3.11 미국	32
2.2.3.12 두바이	33
2.2.3.13 영국	35
2.2.3.14 벨기에	36
2.2.4 해외 면세점 시사점	37
2.3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현황	39

### 3.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실태조사

3.1 조사의 개요	57
3.2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인식에 대한 실태	59
3.3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개선방향 인식에 대한 실태	60

### 4.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국내의 정책동향 및 문제점	63
4.2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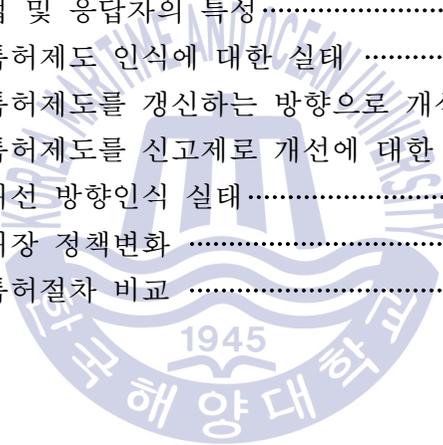
5. 결론	
5.1 연구의 결과 요약 .....	67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68
참고 문헌 .....	69
부록(설문조사) .....	71



## 표 목차

<표 2-1> 운영인의 결격사유 .....	6
<표 2-2> 반입정지 및 특허취소 사유 .....	7
<표 2-3>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절차도 .....	10
<표 2-4> 연도별 세계 면세시장 매출 추이 .....	11
<표 2-5> 국가별 면세판매 매출액 .....	12
<표 2-6> 일본 출국장 면세점 운영현황 .....	13
<표 2-7> 대만의 주요 면세점 현황 .....	18
<표 2-8> 지정면세점 물품 규정 .....	19
<표 2-9> 태국 해외 여행객 방문규모 .....	20
<표 2-10> 킹파워 면세점 매출현황 .....	21
<표 2-11> 특허절차 및 요건 .....	22
<표 2-12> 마카오 입국시 면세한도 및 조건 .....	24
<표 2-13> 중국내 면세점 현황 .....	25
<표 2-14> 특허조건 .....	26
<표 2-15> 구비서류 .....	28
<표 2-16> 라이선스 의무 .....	29
<표 2-17> 여행자 세금(상품서비스제) 환급 요건 .....	30
<표 2-18> 면세점 허가절차 .....	31
<표 2-19> 환급절차 .....	32
<표 2-20> 2014년 영국 면세점 주요 고객 .....	35
<표 2-21> 국가별 보세판매장 종류별 운영 현황 .....	38
<표 2-22> 연도별 종류별 면세점 운영현황 .....	39
<표 2-23> 지역별 면세점 운영 현황(2017년) .....	40
<표 2-24> 시내면세점의 내외국인 이용현황 .....	41
<표 2-25> 면세점 유형별 매출액 .....	42
<표 2-26> 국내 면세점 매출액 성장 추이 .....	43
<표 2-27> 국산품 매출액 .....	44
<표 2-28> 면세점 소재지 및 특허만료일 .....	44
<표 2-29> 기업구분별 면세점 특허 수.면적 및 매출 현황 .....	45

<표 2-30> 대기업 특허현황 .....	46
<표 2-31> 주요업체별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 .....	46
<표 2-32> 주요 기업구분별 매출액 및 점유율 .....	47
<표 2-33> 기업구분별 중소견제품 면적 및 매출액 .....	47
<표 2-34> 지역별 면세점 현황 .....	48
<표 2-35> 중소중견기업 신규특허 추진현황 .....	50
<표 2-36>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영업 현황 .....	51
<표 2-37> 세계 면세점시장 국가별 매출액 및 점유율현황 .....	51
<표 2-38>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 비교 .....	52
<표 2-39> 우리나라 면세점 특허경과 .....	53
<표 2-40> 연도별 종류별 특허업체수 .....	54
<표 3-1> 설문 응답기업 및 응답자의 특성 .....	58
<표 3-2>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인식에 대한 실태 .....	59
<표 3-3>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대한 인식 실태 .....	60
<표 3-4>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를 신고제로 개선에 대한 인식 실태 .....	61
<표 3-5> 보세판매장 개선 방향인식 실태 .....	62
<표 4-1> 국내 보세판매장 정책변화 .....	63
<표 4-2> 보세구역별 특허절차 비교 .....	64



#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patent system of the domestic duty free shop

Nam, Sang H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Abstract

The domestic duty free shop market has been consistently growing with annual 18.4% growth rate since 2011 based on world's highest sales figure and contributed to economic vitalization and job creation.

However, the regulation in the area has been greatly reinforced as the policies have changed rapidly to resolve social criticism that the duty free shop let certain large corporate share monopolistic benefits and to support both small and mid-sized businesses.

The duty free shop restricts period of patent and number of patent based on The Customs Law. There are problems such as unstable employment, business permanence due to termination of patent in accordance with patent system of the duty free shop.

Thus,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patent system of the domestic duty free shop and suggest proper measures.

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patent system of the duty free shop,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creation of high quality jobs, stable employment of duty free shop workers, and enhance future certainty of businesses to vitalize investment and improvement of the duty free shop system.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시장은 세계1위의 매출액으로 2011년 이후 연간 18.4%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서 기여함이 크다. 그러나 보세판매장이 일부 대기업이 독점적 이익을 누린다는 사회비판과 독과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도를 통해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이 급변하면서 규제가 대폭강화 되고 있다.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으로 특허기간과 특허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따라 특허기간 종료로 인하여 고용불안과 사업 영속성의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서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세판매장 종사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자의 미래확실성을 강화시켜 보세판매장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제도의 다양한 분야 중 특허제도 영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하여 보세판매장 종사원의 고용 불안이 증대 되고, 사업자의 미래 투자도 소극적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세판매장 제도중 가장 큰 이슈인 특허제도에 대하여 범위를 한정하고, 설문 대상은 보세판매장 관리자 및 종사원, 보세판매장 유관기관, 관세청(세관) 보세판매장 업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 1.2.2 연구의 방법

최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보세판매장 제도에 관련한 각종 문헌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의 특허비율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할당제를 도입한 다른 산업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장유경(2017)은 면세점 종사원의 전문성이 외래관광객 쇼핑만족도에 대하여 분석 하여 종사원의 교육과 외래관광객 쇼핑만족도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정재완(2012)은 시내면세점이 국민경제의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하여 방문조사 및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보세판매의 렌트(Rent)효과 및 재정수입효과, 외국인의 방한 관광촉진효과, 국제수지 개선효과, 고용효과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과거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본 연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결론을 얻기 위하여 설문대상을 정하고 설문항목과 설문지를 구성하여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분석하여 검정과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1.3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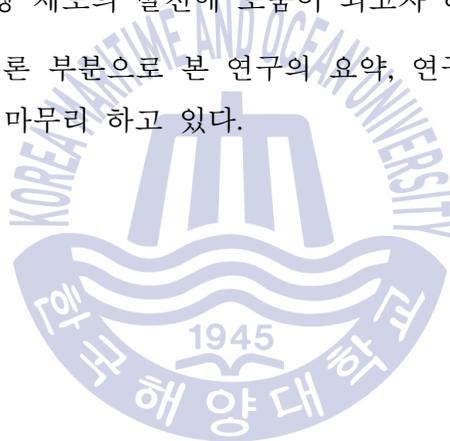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방법 및 구성을 기술하였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보세구역제도 및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보세판매장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을 얻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세판매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요약,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하고 있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2.1 보세구역제도

#### 2.1.1 보세구역의 정의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검사·전시·판매 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검사·제조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작업 등이 가능한 물품은 유세품 뿐 아니라 무세품도 포함되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뿐 아니라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물품이 된 것도 포함된다.

외국물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155조) 이는 세관의 감시와 단속을 보세구역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보세구역의 성격, 시설의 성질 또는 반입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반입물품의 종류는 제한될 수 있다.(관세법 제157조제3항)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장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법상 외국과 동일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정의하고, 보세구역으로 반출 하는 것을 수출로 간주한다.

#### 2.1.2 보세구역의 종류(관세법 제154조)

##### 1) 지정보세구역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일시장치, 물품검사) 수행을 위하여 세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장 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곳으로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3개월의 범 위에서 세관장이 연장 가능하다. 세관검사장은 물품검사를 위한 장소로 입국검 사장, 컨테이너검색센터, 우편물검사장 등이 있다.

## 2) 특허보세구역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지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 다.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세관장의 재량행위로서 특허요건을 갖추었다 하더 라도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특허를 아니 할 수 있다. 특허 기준 은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가 없 을 것, 위험물품의 장치·제조·전시·판매에 따른 관세행정 기관장의 허가 승 인을 받을 것, 보세화물 보관·판매·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장치 면적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수수료는 연면적별로 매 분기당 7 만2천원에서 51만원으로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운 영인이 원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은 해당 연도 매출액에 따라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2천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는 42억원 +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표 2-1> 운영인의 결격사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li> <li>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li> <li>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li> </ol> |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제외)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세전시장은 당해 박람회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보세건설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보세판매장은 5년의 범위를 특허기간으로 한다.

## <표 2-2> 반입정지 및 특허취소 사유

### <반입정지 사유>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3) 종합보세구역

관세청장이 일정한 지역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외국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보관·제조·전시·판매 등을 할수 있는 지역이다.

2.2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2.2.1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1)보세판매장 정의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인의 쇼핑편의 제고로 외화를 획득하고,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이다.

2) 보세판매장 종류

① 외교관 면세점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 ② 출국장 면세점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 판매장을 말한다.

## ③ 시내면세점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 3) 특허의 요건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인적·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적요건으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이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시설요건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과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보세화물 화재, 도난, 유출 예방시설 및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내면세점에서 서울과 부산지역은 매장 496㎡이상, 보관창고 165㎡이상 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매장 331㎡이상, 보관창고 66㎡이상이며, 매장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864㎡이상(다만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288㎡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매장으로 한다.

## 4) 특허신청의 공고

①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이상이며,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기존 보세판매장 특허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보세판매장 특허의 취소 또는 반납 등으로 보세판매장 특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은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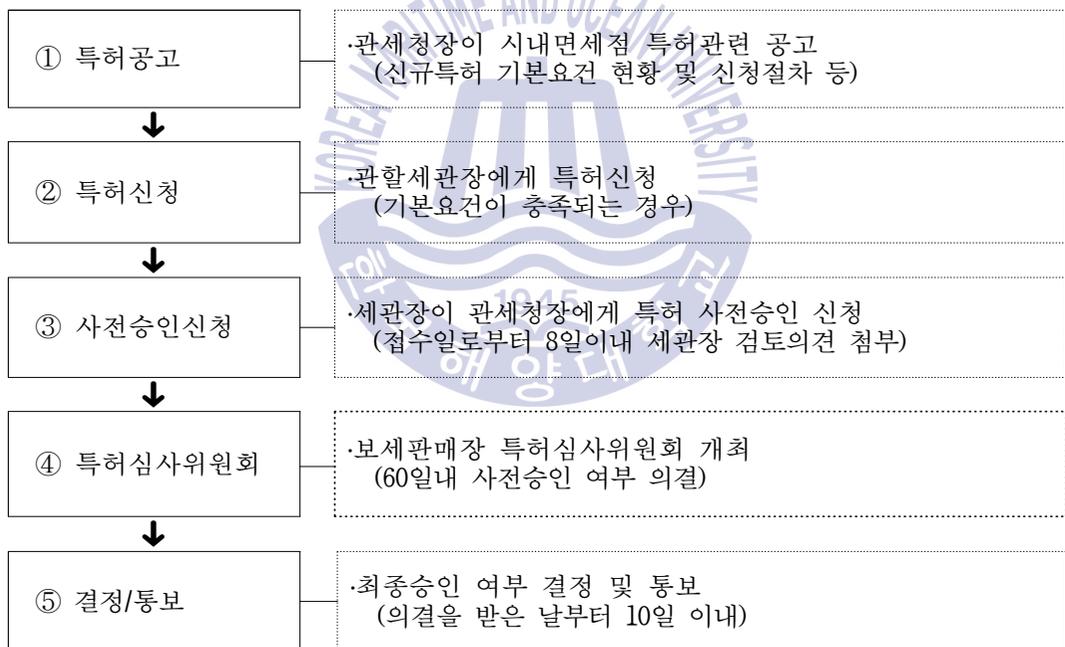
③ 외교관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나, 올림픽·세계공인발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원 및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수 있다.

### 5) 특허기간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보세구역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차시설 또는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임차기간, 한시적 기간 등을 특허기간으로 할 수 있다.

<표 2-3>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절차도



## 2.2.2 해외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세계 면세시장은 세계경제의 침체, 금융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국제적 정세 변화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은 계속되었으나 재방문율이 낮아 질적 성장은 크게 미흡한 상황으로 국내 면세산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면세제도 및 운영전략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세계 면세시장의 흐름

2014년 세계면세산업의 규모는 2013년 600억 달러에서 5.6% 증가한 634억 달러로서 최근 6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면세시장 점유율은 5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2-4> 연도별 세계 면세시장 매출 추이

(단위: USD 백만)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럽	16,176	16,758	18,910	19,272	20,139	20,263
미주	8,702	8,702	10,280	10,855	11,162	11,402
아프리카	711	711	697	764	846	837
아시아태평양	13,000	13,000	16,665	19,902	22,290	25,037
중동	4,026	4,026	4,446	5,005	5,561	5,861
총계	42,600	43,200	51,000	55,800	60,000	63,400

자료: General Data, Duty Free World Council(DFWC)

## 2) 세계 면세시장내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나라 면세시장의 규모는 세계 1위로 2014년 총 매출은 전년대비 22.8% 증가한 77억 8100만 달러(8조 5590억원)이며, 시장점유율은 12.8%이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급격한 성장세(중국 19.2%, 일본 14.4%, 대만 13.7%)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미래 전략수립 및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5〉 국가별 면세판매 매출액

(2014년 기준, 단위: USD 백만)

국가순위	국가명	매출액	성장률(%)
1	대한민국	7,781	22.8
2	중국	5,041	19.2
3	미국	3,753	5.6
4	영국	3,402	1.9
5	홍콩	2,967	1.4
6	독일	2,880	1.9
7	아랍에미리트	2,671	7.7
8	터키	2,106	0.0
9	싱가포르	1,684	-5.1
10	태국	1,537	-8.3
11	프랑스	1,536	6.3
12	일본	1,266	14.4
13	러시아	1,004	-9.2
14	대만	1,212	13.7
15	브라질	1,092	8.2
16	노르웨이	1,032	4.0
17	스페인	1,019	8.3
18	이집트	912	-0.4
19	버진아일랜드(미국령)	900	1.3
20	에스토니아	668	-3.5

자료: Ranking Sales by Country, Duty Free World Council(DFWC)

## 2.2.3 해외면세점 현황

### 2.2.3.1 일본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약 12억 6,600달러(약 1조 3천억원)로 세계 12위이며 매출액 추이가 하락하고 있으나, 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시내면세점 형태의 면세점을 추진하여 향후 성장률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표 2-6> 일본 출국장 면세점 운영현황

구 분	면세점운영 공항수	면세사업자 수	비 고
홋카이도/도후쿠지역	7개 공항	7 사업자	
관동지역	3개 공항	9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리타공항: 4사업자</li> <li>• 하네다공항: 4사업자</li> </ul>
신에쓰/호쿠리쿠/동해지역	5개 공항	5 사업자	
긴키/주고쿠/시코쿠 지역	6개 공항	12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공항: 7사업자</li> </ul>
규슈/오키나와 지역	5개 공항	5 사업자	
합 계	26개 공항	38 사업자	

#### 2) 면세점 정책

면제되는 세금은 소비세, 수입관세, 주세 등 세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구매 후 일본 외로 가지고 나가게 되는 상품의 경우, 일본 국외소비라는 명분으로 세 가지 세금 면제된다. 일본의 면세제도는 수출물품 판매장제도와 공항만

면세점, 오키나와형 특정면세점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수출물품 판매장은 일본 소비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등 비거주자에 한해 소비세(8%)를 면제하고 있다. 소비세 면세는 일본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일본 국외로 반출해야 하며, 일본에 입국한지 6개월 미만인 외국인 여행객과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 또는 예정인 자가 일시 귀국시 면세 대상이 된다.

면세상품 구매시 여권을 제시할 경우 소비세가 면세되며,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관련 환급창구에서 환급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의 관광·정보통신 등의 진흥을 위해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오키나와의 독자적인 관세관계특례조치가 마련되어 1998년 오키나와형 특정면세점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T 갤러리아 오키나와’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소비자가 실제적으로 관세와 내국소비세가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T 갤러리아 오키나와는 오키나와현에서 현 이외의 본토지역으로 출역하는 내·외국인 모두 상품구매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과 동일한 법적 개념은 없으나 보세지역일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관세 등의 납부를 보류한다. 일본 관세법 제29조에 보세구역을 ① 지정보세구역, ② 보세장치장, ③ 보세공장, ④ 보세전시장, ⑤ 종합보세구역 등 5가지로 분류한다.

### 3) 면세점 형태

#### ① 소비세 면세점(Tax-free shop)

일반형 소비세면세점과 수속위탁형 소비세면세점으로 분류되고, 일반형 소비세면세점은 사업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하고, 수속위탁형 소비세면세점은 합동으로 면세카운터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승인 면세수속사업자와 면세점 사업자간 면세수속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후 각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한다.

면세절차는 여권을 제시하고 구입자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며, 판매자는 구입 기록표를 작성하여 여권에 부착하고 할인한며, 출국시 구입기록표를 세관에 제출하나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면세대상금액은 일반물품의 경우 동일 점포 1일 판매금액 10,000엔 초과금이고, 100만엔 이상인 경우 여권 등의 사본을 운영자가 보관하며, 소모품의 경우는 동일 점포 1일 판매금액 5,000엔 초과 50만엔 이하로 비거주자는 소모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 반출해야 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도모를 위해 면세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다.

## ② 공항만 면세점

공항만 면세점은 보세장치장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가능하고, 희망 업체는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관세법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다. 허가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고, 허가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월 9,500엔~88,700엔이 부과된다.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와 소비세가 면세되며,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담배는 담배세가 추가 면세된다.

## ③ 오키나와형 특정면세점

연간 600만명에 달하는 국내·외 여행객을 타깃으로 오키나와 시내면세점 개설 프로젝트 진행 후 매장을 오픈(1998~2004년)하였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오키나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 오키나와 DFS면세점은 기본 면세물품 판매 외 다양한 서비스를 방문객에게 제공하며, 매장 1층에 푸드 콜로세움을 만드는 등 면세시설을 종합 쇼핑몰로 구성하였고, ‘Luggage Express Service’ 를 통해 일본 전역에 24시간 이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나하시의 8개 호텔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면세점 방문이 용이하다.

T 갤러리아 오키나와에서는 면세 브랜드와 비면세 브랜드를 혼합하여 판매하

고, 비면세 브랜드의 경우 관세가 포함된(내국소비세는 면제) 가격으로 판매하며 관세가 면세되는 브랜드의 경우 현장인도가 불가하며 공항 인도장에서 인도한다. 오키나와 이외 지역의 내국인에 대해서도 구입금액 20만엔 한도로 관세를 면세(소비세는 과세)한다.

T 갤러리아 오키나와에서는 국내여행사(단체)에는 4% 이하수준, 해외여행사(단체)에는 4% 이상 6%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며, 가이드에게는 2% 이내 수준으로 지급하며 버스기사 등에는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 4) 면세점(보세판매장) 설립요건

면세점은 출국장과 시내 보세판매장 모두 “보세장치장”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하며,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허가신청 후, 관세법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이 허가하며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시내 보세판매장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점포수의 제한 없이 설립 가능하다.

**관세법 제42조**(보세장치장의 허가) 보세장치장이란 외국화물의 하역 또는 운반을 하거나 이를 둘 수 있는 장소로서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 한 것을 말한다.

2. 제1항의 허가 기간은 십 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십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갱신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제1항의 허가 또는 제2항의 단서를 갱신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 5) 특이 동향

##### ① 소비세 면세점

물품 부정유출에 따른 세수 누수 우려 목소리도 있었지만, 관광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시책 하에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며, 종래 면세대상 품목을 전자제품, 시계, 의류 등 내구재로 제한하고 소모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식료품, 주류, 화장품 등 사실상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상점가·쇼핑센터 등에 면세수속카운터 설치, 신용카드 결제 결제단말기, 면세시스템, 화이파이기기 도입 등 적극지원하고 있다.

## ② 시내면세점

2020년 도쿄 올림픽 대비 시내면세점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시내 보세판매장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입국실련을 위한 액션 플랜 프로그램 2015』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해서 요건만 맞으면 시내면세점 운영 가능하나 다만 하네다 공항 등 인도장 수수료가 너무 높아 진입장벽이 높다.

### 2.2.3.2 대만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약 12억 1,200만 달러로 세계 14위로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만 재정부에서 관세법 제61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공항/항구 면세점, 시내구역 면세점 두가지로 분류한다.

공항/항구 면세점은 해관의 동의를 거쳐 국제공항과 국제항구의 관제구역에 설치하고 시내구역에 예매센터(판매점)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내구역 면세점은 국제공항과 국제항구 인근 도시의 시내구역 혹은 해관의 동의를 거친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대만 면세점은 각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 각 공항의 시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또는 항공회사, 선박회사 등 민간회사가 운영하며 에버리치(Ever Rich) 면세점과 Tasameng 면세점 두 업체가 공항면세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2-7> 대만의 주요 면세점 현황

구 분	지 역	면세점 이름	위 치
공항점	가오슝	대만연주주식회사 공항점 에버리치 공항점	가오슝 국제공항 가오슝 국제공항
	핑후	Profound 공항점 (에버리치 자회사)	핑후마공공항
	타이베이	에버리치 공항점 에버리치 공항점 Tasameng 공항점	타이베이쑹산공항 타오위안국제공항
	타이중 타이둥	에버리치 공항점 에버리치 공항점	타이중공항 화롄공항
항구점	진먼	에버리치 항구점	진먼수두무역항
	핑후	Profound 항구점	핑후마공무역항
	타이베이	에버리치 지룽동부항구	지룽시
시내점	타이베이	에버리치 민권점 에버리치 내호구지점 에버리치 도원점	민권동로 내호구 금장로 도원현 대원항

## 2) 면세점 정책

대만 재정부에서 관세법 제61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한 ‘면세상점 설치관리방법’에 의하여 면세점을 설치·운영하며 영업 허가 기간은 3년이고 3년 연장가능하다

중국이 관광소비의 제1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면세품 구매액의 상한선을 6만 TWD에서 100만 TWD로 조정하고 진먼, 샤먼, 취안저우 등 3곳의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여 1일 쇼핑권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3) 면세점 형태

사전면세 성격의 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 국세국 관광발전조례에 따라 관할 국장책임하의 사후 면세점 (Tax-Refund), 지방정부 관할부처 책임하에 지정 면세점이 존재한다.

〈표 2-8〉 지정면세점 물품 규정

장소 품목	기타 출도지역 또는 대만 내	중국 또는 기타 국가로 이동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1리터</li> <li>• 구매횟수 1년 1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3리터 이하</li> </ul>
담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담배 200개피(시가 25개피 또는 담배 1파운드 이하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담배 200개피(시가 25개피 또는 담배 1파운드 이하로 제한)</li> </ul>
기타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물품 외에 구매금액을 NTD 60,000 으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물품 외에 구매금액을 NTD 100만 이하로 제한</li> </ul>

### 4) 자격요건

면세점 사업 허가 신청자는 회사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로서 적어도 NTS 5천만 자본 이상 가져야 하며 관광객들에게 상품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여야 하고, 면세점의 동일한 법인에서 자체 제공하는 보세창고의 세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소유해야 한다.

### 5) 송객수수료 현황

타이베이 시내면세점은 에버리치 독점구조이기 때문에 여행사에 10% 정도 송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판매상품에 따라 수수료율은

다르게 책정된다.

사후면세점은 50 ~ 55%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행사에 지급되는 것은 30% 정도로 볼 수 있다.

#### 6) 특이 동향

다른 국가와 다르게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한정하여 입국 시에도 입국장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 가능하다.

### 2.2.3.3 태국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15억 3700만 달러로 세계 10위이며 중국관광객의 증가로 방콕의 쑤완나폼 공항 매출이 성장하며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표 2-9> 태국 해외 여행객 방문규모

구 분	12년		13년		
	관광객(만명)	신장율(%)	관광객(만명)	신장율(%)	구성비(%)
중 국	366	41.9	476	30.0	19.4
말레이시아	256	2.4	260	1.6	10.6
일 본	137	21.2	140	2.2	5.7
한 국	117	15.8	130	11.1	5.3
합 계	2,230	16.0	2,450	9.9	100

관세법에 의해 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으로 구분되며 24개의 면세점(공항 16개, 시내 8개)이 있고 킹파워(King Power) 면세점은 태국 독과점 면세점으로 3개의 시내면세점과 5개 공항에 독점 면세점 운영하고 있다.

내국세 법령에 의해 관광객용 VAT 환급 면세점(VRT Shop : VAT Refund for

Tourists Shop)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2천개의 VRT Shop이 운영되고 있다.

〈표 2-10〉 킹파워 면세점 매출현황

(단위: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연평균성장률(%)
시 내	3,870	5,512	6,427	28.9
공 항	7,280	8,460	14,150	39.6
전 체	11,130	13,972	20,577	36.0

## 2) 면세 정책

사전면세점 운영자는 관세법 및 재무부 규정에 따라 특허신청수수료는 없으나 연간 면세점당 3만 바트의 라이선스 피(license fee)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고시에는 민간 사업자 외에 국가운영 사업자 및 국가 자체도 면세점 설립 신청의 자격이 있으나, 현재 모든 면세점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점 운영은 태국 공항공사(AoT)가 킹파워에 대해서만 운영을 허용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태국 관세청 의중과는 무관하고 킹파워는 매년 AoT에 14억 바트와 판매수입의 15% 지불 계약을 했다.

사후면세점(Tax-Refund)은 1999년 관광 진흥차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 출국시 VRT(VAT REFUND FOR TOURISTS) Shop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VAT를 출국시 환급해준다. 외국인 입국자 대상이며 내국인과 외교관, 승무원에 적용되지 않으며 구매물품 가격이 2천 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VRT Shop 운영자는 VAT등록 사업이어야 하고 방콕에서 운영시 200만바트 이상 자본금 보유, 방콕 이외의 경우 50만 바트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면서 세금납부기록이 양호 하여야 한다.

세관은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역할(특허기간, 독과점, 중소기업제품 판매, 매출액 보고 등)은 없으며 1년에 4회 세관 지휘 하에 정기 재고 조사, 3개월마다 전산시스템과 실제 리스트를 방문 대조, 여행자가 체크인 전 VAT 환급대상 물

품을 확인 검사 하는 등 보세화물 관리에 치중한다.

### <표 2-11> 특허절차 및 요건

#### <절차>

- ①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조세지원국에 특허 신청
- ② 관세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장소를 검사하고 장소 검사일부 터 15일 이내에 결과 통보
- ③ 관세청으로부터 오류통보가 없다면 면세점을 설립할 수 있는 가인가를 받은 것임
- ④ 신청자는 가인가 후 면세점 운영시설의 설치, 관세청장이 허가하는 바에 따른 세 관시스템에 연결 후, 운영 전 세관직원 현장 검사를 위해 세관에 통보
- ⑤ 세관직원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현장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운영 허가 통보

#### <요건>

- 운영자는 자본금 1백만 바트 이상의 법인
- 자본금의 51% 이상은 태국인 소유
- 운영자는 전시 및 판매 공간, 관리시스템, 인도장 시설 및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금전등록기 구비
- 운영자는 신청일 전 3년간 관세법 및 관련법 위반경력이 없어야 함
- 미납관세가 없어야 함
- 운영자는 5백만 바트의 은행보증을 예치
- 매 회계연도 재고 50%에 대한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
- 운영자는 세관직원용 사무실과 시설을 제공
- 회계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을 구비해야 하고 세관시스템과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비
- 판매내역 데이터 보고시스템, 외국으로 물품 반출을 보장하는 물품 tracking 전 산시스템을 구비

#### 2.2.3.4 홍콩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29억 6700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으로 총 8개의 보세창고

(육상국경, 페리터미널, 기차 터미널에 설치) 중 홍콩공항에 2개의 특허보세창고 있고 각 보세창고는 하나 이상의 판매 매장을 가지고 있다.

## 2) 면세 정책

홍콩은 관세가 없는 중국 경제특구로 소비세는 단일세종으로 4개의 품목, 즉 20도씨 상온에서 30도 이상인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메틸알코올에 부과하며, 과세상품의 이동, 제거시 허가가 필요하고, 과세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하거나 세관과 내국세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은 곳에 장치하여야 한다.

특허의 종류로 과세물품의 수출입 자격을 획득하는 수출입라이선스, 과세물품의 보관을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보세창고 라이선스,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생산자 라이선스가 있으며 면세점 운영자는 수출입 라이선스 및 보세창고 라이선스가 필수이다.

### 2.2.3.5 마카오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5억 5,200만 달러로 세계 24위 수준으로 홍콩과 유사하게 4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면세정책 유지하고 있다.

#### 2) 면세 정책

모든 상품에 부가세가 없으며, 수입상품 일부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내 상점 모두 술·담배 상품을 제외하고는 면세 상품이며 마카오내 상점 운영시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술·담배의 경우에만 라이선스 취득 필요하다.

〈표 2-12〉 마카오 입국시 면세한도 및 조건

구분	면세조건
개인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p 10,000(한화 150만원 상당)</li> </ul>
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인 1리터(알콜 함량 30% 미만)</li> <li>• 기타주류 1리터(알콜함량 30% 미만)</li> </ul>
담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개피( '15.7.15 이전, 19개피(마카오)에서 변경)</li> <li>• 시가의 경우 1개피(3그램 미만)</li> <li>• cigarette/cigar 합산 최대 25그램</li> </ul>
전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디지털/필름/비디오 카메라, 망원경, 라디오, 레코더 각 1개</li> </ul>
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li> </ul>

### 3) 국내기업 진출상황

킹과워면세점(태국과 상이법인)이 독점하였으나, 신라면세점이 스카이커넥션(홍콩社)과 4:6 수익배분 계약으로 마카오 공항입찰을 통해 320평 획득(킹과워와 동일)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 편집숍인 ‘스윗메이(Sweetmay)’ 홍콩 4개, 마카오 3개 지점 성업 중이며 국내 대기업(신라면세점) 면세사업부가 투자한 자회사 격으로 중소기업 화장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우수사례이다.

### 4) 특이 동향

14년 이후 불필요한 소비억제를 위한 중국정부의 중국인 방문횟수 쿼터제(3개월에 1회) 및 사용한도 제한 카드제(年 10만불) 실시로 마카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 2.2.3.6 중국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약 50억 4,100만달러(약 5조 5,451억원)로 세계 2위 수준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면세점을 운영 중인 업체는 총 5개사이고, 중국면세품주식유한공사(China Duty Free Group, CDFG)만이 유일하게 국무원 승인을 받은 전국 범위 사업자로 하이탕완 면세쇼핑센터를 비롯하여 전국 290여 개의 항만, 국경 면세점을 운영 하고 있다.

〈표 2-13〉 중국내 면세점 현황

운영권한	회사명	기업분류	운영지역
전국운영	중국면세품주식유한공사	국유기업	하이탕완 면세쇼핑센터, 공항, 부두, 변경 등 290여 개
시범운영	SUNRISE DUTY FREE (일상면세점)	외자기업	푸둥국제공항, 홍차오공항, 베이징수도국제공항
지역운영	선전시국유면세상품그룹	국유기업	선전 각 항구
	주하이면세기업그룹	국유기업	주하이 각 항구
	하이난성면세품유한공사	국유기업	하이난 성 내

#### 2) 세계 최대 시내 면세점

기존 산야 다동하이 면세점의 수용능력 한계에 따라 중국면세그룹은 하이탕완 프로젝트를 추진, 세계 최대 규모의 시내면세점을 건립하였다. 3층 건물 2동으

로 약 2.3천명 근무, 300여개 브랜드가 입점하였고 연간 매출액은 약 30억위안 (한화 5,000억원) 수준이며 국가 정책 상으로 면세 주류,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특허수수료는 순이익의 4% 수준 [기업세(15~25% 수준)는 별도] 이며 특허기간은 제한이 없고 가이드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나, 산야 시내에서 면세점까지 무료 셔틀 서비스는 제공한다.

#### <표 2-14> 특허조건

- ①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출 것
- ② 해관관리감독에서 요구하는 면세점 판매장소 및 면세품 관리창고를 보유할 것
- ③ 해관관리감독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관리시스템을 보유하여 면세품 입고, 판매 내역 등의 정보를 해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
- ④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항구면세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항구 면세점 소재항구의 출입국 연인원 5만명 이상일 것
- ⑤ 협력계약, 경영모델, 법인 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완성된 기업장정(章程)과 내부 재무관리제도를 갖출 것
- ⑥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해관규장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할 것

### 3) 상해시 Tax-Refund

상해시 국가세무국(상해시 지방국세청)이 지정한 27개 상점에서 구매한 물품 중 증치세 환급요건을 갖춘 자가 푸둥공항과 홍교공항 출국시 해관은 환급물품, 환급신청서, 판매영수증을 확인하고 환급한다.

동일 외국인 여행객이 같은 날, 같은 환급 商店에서 구매한 환급물품의 금액이 500RMB 이상이고, 환급신청 시까지 환급물품이 소비·사용되지 않으면서 출국일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면서 환급물품이 외국인 여행객 본인이 소지하거나 기탁화물로 운반되어야 한다.

### 2.2.3.7 캄보디아

2014년 총매출액 8만 달러로 세계 69위수준으로 면세 면허 관련 법규는 일부 성문화되어 있으나, 관습적으로 적용 또는 관세청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다수이다. 로펌 조사시 구체 적용 규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부재로 대부분 관세청 공무원과 1:1 비공식 컨설팅을 통해 진행한다.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량 및 판매수량제한 등 법규상 일부 독소조항이 존재하며 통상 상향 방식으로 면허 획득 추진시 기간 및 투입자원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 2.2.3.8 필리핀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26만 달러 세계 43위 수준으로 필리핀 정부가 면세점 운영의 독점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출국장 면세점, 입국자 대상 면세점과 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특별구역 내 면세점이 있다.

#### 2) 면세 정책

출국장 면세점은 관광부 산하기업 Duty Free Philippines Corporation(DFPC)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국제공항만 출국장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다. 입국자 대상 면세점은 입국 24시간 이내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마닐라국제공항과 공항 근처 면세백화점을 운영하고,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나 18세 이상 해외근로 자국민에게는 기타 여행객보다 높은 면세한도를 허가한다.

경제특구내 면세점은 총 316개의 경제특구 중 5개의 경제특구(Subic, Clark, Camp John Hay, Poro Point, Zamboanga)에서의 면세품 판매를 정부 및 사기업에게 허가하고, 출입국하는 내외국인들 및 특구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며 각각 구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과 금액의 한도가 다르며 면세한도는 출입국 내외국인 1,000불, 해외근로 자국민 2,000불이며 특구의 성인 거주자에게는 1개월에 100불, 비거주자에게는 연간 200불로 한정한다.

### 3) 특이 동향

2000년도에 발행된 행정명령 303호는 기존 면세점의 확장 및 신규 면세점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는 면세점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DFPC를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편, 세부 등 국제공항의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공항 면세점 운영권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2.2.3.9 싱가포르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16억 8,4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으로 싱가포르 관세청에 의해 면세점 라이선스를 받아 주류 및 담배 등의 과세 상품을 외국인 관광객이나 출입국 내국인들에게 면세로 판매한다.

##### 2) 면세 정책

면세점은 상품 소유자 또는 면세품을 관리하는 서비스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며, 면세점 운영자는 창이 공항 터미널 및 페리 터미널에서 면세점 운영권한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특허신청은 인터넷 efilling 시스템으로 면허신청이 가능하며 면세점 운영 라이선스 비용은 연간 70,000싱불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싱가포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표 2-15> 구비서류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장소 계획서와 허가를 받은 부지 계획서 2부</li><li>② TradeFIRST(Trade Facilitation &amp; Integrated Risk-based System)*에 의한 평가 및 점검 결과<br/>* 싱가포르 관세청의 원스톱 평가 체계</li><li>③ 은행간 GIRO 지원서(싱가포르 관세청에 IBG account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li><li>④ 부지 계획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포함한 조직도</li><li>⑤ 최신 연말 재무제표</li><li>⑥ 상점 관리 규정집<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고조사표, 발견된 재고 불일치 사항, 그리고 기타 규제사항 포함</li><li>· 직원이 실행한 검사 및 재검사의 단계별 세부사항이 포함</li></ul></li></ol> |
|---|

### <표 2-16> 라이선스 의무

- 허가된 면세점에 보관되어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한 책임
- 허가된 면세점에 대한 구조 변경에 앞서 세관의 사전 승인 및 허가를 받을 의무
- 면세점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할 의무
- 면세점에서 과세 물품의 이동이 없을 때에 모든 입구 및 출구 보안 의무
- 부과 관세법 및 관세 규정과 조건을 준수할 의무
- 재고 기록을 상시 관리하고 업데이트 해야 할 의무
- 실제 재고 사항과 기록된 재고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세관에 알릴 의무
- 면세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상품들을 Trade Net(싱가포르의 무역 및 물류 커뮤니티 단일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세관의 승인을 받을 의무

### 3) 사후면세[Tax-refund] 제도

학생 비자 소지 여행자의 경우 학생 비자 만료일 기준 4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고 싱가포르를 출국하여 최소 12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상품서비스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크루즈 터미널에서 국제 크루즈(목적지 없는 크루즈, 왕복 크루즈 및 지역 페리 제외)를 통해 출국할 경우 싱가포르가 출국지이며, 크루즈 여행 일정표를 출국증명 문서로 하여 동일한 여행과 동일한 크루즈로 재입국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고 48시간 내로 싱가포르로 재입국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해야 한다.

상품서비스세(GST) 환급신청방법은 소매점에서 발급한 여행자 세금환급제도 전자티켓(eTRS) 자동 환급기에서 상품서비스세(GST) 환급을 신청하고 eTRS 자동환급기에서 실제 물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경우 물품을 직접 세관 카운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환급되지 않는 사례로는 싱가포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 소비한 물품, 사업 또는 상업 목적으로 수출되는 물품, 화물로 수출되는 물품, 호텔, 호스텔, 하숙 또는 이와 유사한 숙소의 숙박비, 세관 검사시 제출하지 않은 물품 등이 있다.

## <표 2-17> 여행자 세금(상품서비스세) 환급 요건

- 구입 당시 최소 만 16세 이상
-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님
- 구매일 이전 24개월간 싱가포르에 365일 이상 체류하지 않음
- 구매일 이전 6개월간 싱가포르에서 고용되어 근무한 적 없음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 또는 선원이 아님
- 구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창이 국제공항이나 셀렉타 공항, 하버프론트의 싱가포르 크루즈센터 또는 마리나 사우스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크루즈센터를 통해 반출
- 최소 \$100 이상의 금액 소비<상품서비스세(GST)포함>. 최소 구매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일한 상품서비스세 등록 번호를 가진 소매점에서 하루 최대 3건의 송장/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상품서비스세 환급허가를 받은 후 반드시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가지고 출국해야 함

### 2.2.3.10 인도네시아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2억 1000만 달러로 세계 45위수준으로 인도네시아 내국인들의 면세점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 전체 면세 시장은 아직 크지 않고, 면세점은 위치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국제터미널에 있는 면세점 두가지로 분류된다.

주류 판매가 인도네시아 시내 면세 사업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주요업체로는 글로벌업체인 LOTTE DUTY FREE(한국), DFS(미국), DUFREE(스위스), HINEMANN(독일)과 로컬업체인 PLAZA BALI, FORTUNE 등이 있다.

#### 2) 면세 정책

면세점 운영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 투자회사 인지 구분하여 외국 투자회사는 인도네시아 투자청 先인가 후 관세청의 허가를 득하며, 면세업 허가 외 주류, 담배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면허기간은

3년이며 추가연장시 허가 득한 후 연장 가능하다.

**<표 2-18> 면세점 허가 절차**

- ① 면세점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본부세관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공항의 경우 Banten, 시내의 경우 Hallim, 지역마다 관할 지역세관이 별도로 있음
- ② 신청서 제출방법은 문서 및 전자문서 구분 없이 가능하나 반드시 명시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③ 신청서를 받은 담당 세관장은 심사를 통해 요구사항 및 제출문서가 완전히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내
  - 신청서가 전반적인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심사
  - 면세점의 위치와 레이아웃, 세관 배치여부
  - 심사 후 세관장의 추천서
- ④ 관세청장은 지역본부세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수령일로부터 10일 내에 허가 혹은 거부를 해야 한다

3) Tax Refund 매장의 설립절차

Tax Refund Shop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설립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또는 국내 투자기업이나에 따라 법인설립에 필요한 문서 종류가 다르고 재무부장관령 (pmk no.76/pmk.03/2010) 규정에 따라 국세청 일반과세대상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VAT 환급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매점은 VAT 환급 웹 사이트(<http://vatrefund.pajak.go.id>)를 통해 PIN, 사용자 ID와 암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표 2-19〉 환급절차

- **(환급대상)** 외국인 또는 인도네시아의 영주권자가 아닌 자, 인도네시아에 2개월 이하 거주자, 비 항공사 승무원 (PMK-76 / PMK.03 / 2010제1조 제1항)
- **(환급불가 물품)** 식품, 음료, 담배, 비행기에 반입 할 수 없는 총기 및 폭발물 (PMK-76 / PMK.03 / 2010제3조 제2항)
- **(환급 장소)** 세금 환급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출국시 할 수 있고 공항에 있는 세금 환급소를 통해 가능하다 (PMK-76 / PMK.03 / 2010제 3조 제 3항)
- **(VAT 환급 조건)** 부가가치세액 IDR 500,000이상, 출국 전 1개월 내 상품 구입, 동일 날짜 세금영수증 (PMK-76 / PMK.03 / 2010제6조)

### 2.2.3.11 미국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37억 5,300만 달러로 세계 3위 수준이나, 연도별 증가율은 크지 않아 향후에도 미국 면세산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관세율이 높지 않아 공항면세점과 시내 일반 매장과 가격 차이가 미미해 면세품 구매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미국인들의 구매 특성상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며 전 세계 여객 교통량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교통량의 비중이 높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미국 내 주요 면세사업자로는 DFS Group, GLSI 등이 있다.

#### 2) 면세 정책

미국은 관세법상 사후면세점 규정만 있고 그 종류는 공항면세점, 항구면세점, 시내면세점이 있다. 보세판매장은 각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 각 공항의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 또는 항공회사, 선박회사 등 민간회사가 운영한다. 시내면세점 시설 조건이나 규모는 특별한 것이 없고 내국인 구매 허용이 가능(내국인 구매

금액 한도 없음)하고, 공항출국장 면세점은 경쟁 입찰에 의해서 운영권 확보며 세관은 면세점 운영에 대해 지원자 역할을 한다.

2012년 1월, LA국제공항 측은 그동안 면세점을 운영하던 DFS가 2013년 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고, 이 공항의 상업용 공간은 톰 브래들리(Tom Bradley) 터미널을 비롯한 9개의 터미널로 구성돼 있고 전체 면적은 약 3,716㎡에 달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10년간 주류와 담배, 화장품, 토산물, 고가 브랜드 제품 등 전 영역에서 LA국제공항 내 모든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에 따라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2.2.3.12 두바이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26억 7,100만 달러 세계 7위 수준으로 두바이 공항은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을 제치고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달성했으며 여행객 수가 2002년 1490만명(16위)에서 2013년 7047만명(1위)을 기록했고 세계 공항 최초로 7000만명을 돌파 했으며 허브(hub·거점) 공항의 중요 지표인 환승률은 53%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천공항 16% 수준)이다.

국영기업인 Dubai Duty Free에 의해 두바이 국제공항, 알막툼 국제공항 및 항구에 면세점을 운영하며 시내 면세점도 운영 중이다. Dubai Duty Free는 2013년 1.8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단일 공항, 단일 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은 세계 면세산업에 떠오르는 국가이며 늘어나는 아시아 고객들을 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으로 공항면세점은 24시간 운영하며 약 60개국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글로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반나절 두바이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환승고객들의 유입효과를 극대화하고 면세점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 2) 면세 정책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GCC<sup>1)</sup> 관세 협정에 따라 공산품에 대해 공통 관세 5%를 적용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제도를 인허가(License) 규정으로 명시하여 보세판매장 제도를 정부의 영역 하에 두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방은 술과 담배에 한해 관세법 'No.(19) of 2002' 개정 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술 50%, 담배 100%의 수입관세를 적용한다. 중국과 유사하게 정부허가에 의한 위임기관(두바이 사무국)이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70%, 민간 30% 소유형태로 정부의 면세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민간이 주도적이다.

UAE 두바이 정부 민간항공당국 허가 하에 라이선스가 발급되며 현재 이를 획득한 기관이 두바이 보세판매장 사무국이며 이들이 보세판매장 운영을 규제한다. 두바이 공항의 면세점(1984년 설립)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단일 면세점으로는 전 세계 면세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다.

면세점들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DDF(Dubai Duty free)를 통해 운영되며, DDF는 종업원수 4,000~5,000명으로 두바이 공항에서 소매업 관련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중동에서 두바이를 스포츠, 레저와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은 원산지 제조업자와 직거래 또는 현지 공급업체들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면세점에서는 매일 재고를 체크하여 원활한 제품공급을 위해 3달 전에 미리 제품을 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을 납품하는 새로운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할 경우 면세점에서 직접 방문하는 업체의 시설과 규정을 살펴보는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

---

1) GCC 국가 : 사우디,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UAE

### 2.2.3.13 영국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약 34억달러(약 3조 7천억원) 세계 4위 수준으로 전부 공항에 위치하며 항만에는 없다. 영국 면세점(Duty-free shop)의 공식명칭은 expert shop으로 비(非)EU 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xcise 판매될 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된 ‘소비세 면세창고(ewarehouse)’로 정의된다.

영국의 면세점은 민간 기업이 면세점의 형태로 운영하며 총 3개 기업이 공항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 중 1개 업체(Dufry)가 전국시장 90%를 점유(나머지 2개 업체는 일부 지역 공항 면세점 운영)하고 있다.

영국 면세점 주요 고객(국적별)은 중국으로 영국 전체 소비의 26%를 차지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67%)와 카타르(23%), 홍콩(27%)이 급등하였다.

<표 2-20> 2014년 영국 면세점 주요 고객

국 가	점유율(%)	성장률(%)	평균 지출액(£)
중 국	26	2	758
사우디아라비아	8	67	885
쿠웨이트	8	-1	638
카타르	6	23	1,658
UAE	5	-24	1,315
나이지리아	4	-7	533
말레이시아	4	7	608
홍 콩	3	27	742
미 국	3	-16	592
태 국	3	-21	760
전 체	100	-2	661

자료: 관세청

## 2) 면세정책

영국 면세점(인가)에 대한 법령은 관세와 소비세 관리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으로서 (EU 수준이 아닌) 영국 자체적으로 제정 시행한다. 면세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당국(HRMC)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HRMC는 심사를 통해 45일 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HRMC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제시한다. 또한, 수시로 감사와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규정이 엄수되지 않을 경우 면세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소비세 환급제도가 없으나, 소비세 부담 의무가 없거나 자격을 충족할 경우 면세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다른 조세(예,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제도는 별도 법령을 적용 받는다. 참고로 외국인인 영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일정기간 내 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VAT) 규제법에 근거하여 사후 부가가치세(VAT) 환급제도를 운영한다.

### 2.2.3.14 벨기에

#### 1) 면세사업 현황

2014년 총매출액 37만 달러 세계 33위 수준이며 면세점 종류로는 DUTY FREE SHOP(사전면세점)과 TAX REFUND SHOP(사후면세점)이 있다.

#### 2) 면세 정책

사후환급(VAT)은 EU 역외에 거주하는 여행자에 대해 일반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상업용이나 기업용이 아닌 물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건당(invoice) 125유로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되어야 한다. 물품 구매시 대금 전체를 지급한 후 환급신청의사를 표시하며, 이때 EU 역외 거주사실을 증명하고 유효한 주소를 제공한 후 신청양식을 접수한다.

Hold Luggage(수탁물)인 경우 hold luggage check-in 이전에 세관을 방문하여 신분증, 항공권, 인보이스, 대상물품을 제시하고 물품을 항공사에서 check-in

한 후 boarding pass, 수탁물 레벨, 인보이스를 소지하고 세관을 다시 방문하면 세관이 인보이스에 수출사실을 날인한다. Hand Luggage하는 경우 여권검사 후 물품을 가지고 세관을 방문하여 신분증, 항공권, 인보이스와 물품을 제시하면 세관이 인보이스에 수출사실을 날인한다. 환급신청인은 이렇게 세관확인을 받은 인보이스를 공급자(supplier)에게 발송하여 환급을 받는다.

벨기에 면세점은 공항만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공항의 경우 EU 역외를 연결하는 국제항공노선이 거의 없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면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면세점이 소재하는 공항의 소유자에게 공항건물내의 일정 장소를 임차하여 세관 또는 재정당국으로부터 면세점 운영권한을 취득한다.

면세점 허가(licence)를 받고자하는 자는 면세점이 소재하는 공항의 감시당국(surveillance)에 공항소유주가 발행한 임대확인서류 사본, 공항 건물에서의 위치 계획(필요시 세관 또는 창고의 배치 계획 포함), 면세점과 창고의 평면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면세점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면세점 허가시에 세관당국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는 없다. 다만, 공항 소유주에게 임차료는 부담해야하며 이에 대하여는 세관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 2.2.4 해외면세점 시사점

첫째, 세계는 정부개입 최소화로 시장주도 경제체제로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으나 국내면세시장은 글로벌 최상위권으로 불필요한 규제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면세사업 지원 정책과 규제완화로 국내외 면세사업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식 사후면세점(상품 구입시 즉시 면세) 도입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고 해외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홍콩·마카오 소재 스위트메이(Sweetmay) 슝은 대기업(신라)이 투자한 매장

에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하는 우수 사례로서 해외 진출시 적극 활용하여 상생협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21> 국가별 보세판매장 종류별 운영 현황

구분	보세판매장			사후환급점
	출국장 보세판매장	입국장 보세판매장	시내 보세판매장	부가세 환급점
그 리 스	○	X	X	○
노르웨이	○	○	X	○
뉴질랜드	○	○	○	○
대 만	○	○	○	○
덴 마 크	○	○	X	○
독 일	○	○	X	○
룩셈부르크	○	X	X	○
말레이시아	○	○	○	X
미 국	○	○	○	X
벨 기 에	○	X	X	○
브 라 질	○	○	○	○
스 웨 덴	○	X	X	○
스 페 인	○	X	X	○
싱가포르	○	○	○	○
아르헨티나	○	○	X	○
영 국	○	X	○	○
오스트레일리아	○	○	○	○
오스트리아	○	X	X	○
이 집 트	○	○	○	X
이탈리아	○	X	X	○
일 본	○	X	○	○
중 국	○	X	○	X
칠 레	○	○	X	○
캐 나 다	○	○	○	○
태 국	○	○	○	X
터 키	○	○	X	○
포르투갈	○	X	X	○
폴 란 드	○	X	X	○
프 랑 스	○	X	○	X
핀 란 드	○	X	X	○
헝 가 리	○	○	X	○
홍 콩	○	○	○	○

자료: 관세청

### 2.3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현황

면세점 점포수는 88년 올림픽 특수를 이용하여 증가하여 1989년에 34개소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올림픽이후 수요가 차츰 감소하여 폐업하는 등 고통을 감당한 후 1999년에 20개소가 되었으나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와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로 점차 다시 증가하여 '17년 12월 기준 4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시내면세점의 비중은 줄어들고 출국장 면세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각종 국제대회의 개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활성화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시내면세점이 29개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주 동화(1995), 경주 동화(1998), 부산 동화(1999), 경주 남문(2003), 제주 한진(2006) 등 20여개 시내면세점이 차례로 폐업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기준 국내에 운영 중인 면세점은 외교관면세점 1개소, 시내면세점 23개소, 출국장 면세점 20개소이며, 내국인 면세점 4개를 포함하여 총 48개의 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표 2-22> 연도별 종류별 면세점 운영 현황

종류별		1989	1999	2009	2009	2014	2015	2016	2017
보세 판매 장	외교관	1	1	1	1	1	1	1	1
	출국장	4	8	15	15	20	22	22	20
	시내	29	11	10	10	17	19	22	23
	소계	34	20	26	26	38	42	45	44
지정	-	-	4	4	5	5	4	4	
합계	34	20	30	30	43	47	49	48	

자료 : 관세청

외교관 면세점의 경우 서울에 1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출국장의 경우 공항에 16

개, 항만에 4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공항은 인천에 7개, 김포와 김해, 청주에 2개, 대구, 제주, 무안에 각각 1개씩 운영 중이고, 항만은 인천에 2개, 군산, 부산에 각각 1개가 운영중이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서울에 10개, 제주에 3개, 부산에 2개 울산, 창원, 대전, 대구, 수원, 청주, 인천, 강원예 각각 1개씩 운영 중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에 4개가 운영 중이며 공항에 1개, 항만에 2개, 시내면세점 1개가 운영되고 있다.

<표 2-23> 지역별 면세점 운영 현황(2017년)

구 분		운 영 현 황
보세 판매 장 (44)	외교관(1)	•서울(1)
	출국장 (20)	•공항(16) : 인천공항(7), 대구(1), 김해(2), 제주(1), 청주(2), 김포(2), 무안(1) •항만 (4) : 인천(2), 군산(1), 부산(1)
	시내(23)	•서울(10), 제주(3), 부산(2), 울산(1), 창원(1), 대전(1), 대구(1), 수원(1), 청주(1), 인천(1), 강원(1)
제주 지정면세점(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 : JDC 제주공항점</li> <li>• 항만 : JDC 제주항 1점·2점</li> <li>• 시내 : JTO(국제컨벤션 센터)</li> </ul>	

자료 : 관세청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개년 간의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구성비는 다음 <표 2-24>와 같다.

<표 2-24> 시내면세점의 내외국인 이용현황

(단위 : 천명, 백만 USD)

구분		이용자		매출액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10년	외국인	2,379	47.5%	1,182	55.6%
	내국인	2,634	52.5%	943	44.4%
	합계	5,013	100.0%	2,125	100.0%
2011년	외국인	2,972	49.9%	1,655	62.2%
	내국인	2,986	50.1%	1,006	37.8%
	합계	5,958	100.0%	2,661	100.0%
2012년	외국인	3,716	50.7%	2,214	70.0%
	내국인	3,608	49.3%	951	30.0%
	합계	7,324	100.0%	3,165	100.0%
2013년	외국인	4,093	50.5%	2,779	74.7%
	내국인	4,007	49.5%	942	25.3%
	합계	8,100	100.0%	3,721	100.0%
2014년	외국인	6,300	55.9%	4,146	80.8%
	내국인	4,963	44.1%	983	19.2%
	합계	11,263	100.0%	5,129	100.0%
2015년	외국인	6,857	50.4%	4,334	79.2%
	내국인	6,746	49.6%	1,136	20.8%
	합계	13,603	100%	5,470	100%
2016년	외국인	10,514	58.3%	6,427	83.5%
	내국인	7,514	41.7%	1,272	16.5%
	합계	18,028	100.0%	7,699	100.0%
2017년	외국인	6,774	44.3%	8,330	84.7%
	내국인	8,513	55.7%	1,510	15.3%
	합계	15,287	100.0%	9,840	100.0%

자료 : 관세청

각 연도별로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후 2017년(사드여파로 중국 여행객 감소)을 제외한 이용자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인 구성 비율이 모두 50%를 상회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면세점 이용자 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5백여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2월 현재 전체이용자 수는 1천 5백여만 명으로 약 1천여만 명 증가하였다. 특히 이용자 중 외국인의 시내면세점 이용이 약 4백여만 명이 증가하여 2010년 대비 약 284%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의 경우 외국인 이용객의 수가 적은 연도에도 외국인이용자의 매출액이 50%를 넘었다. 특히 2017년 12월 현재 외국인에 대한 매출액은 8,330백만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면세점 유형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25>와 같다.

<표 2-25> 면세점 유형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 분	' 15년	' 16년	' 17.1~12월		
			실적	전년대비 증감비율	구성비
외교관	12	9	6	△33.3	0.0
출국장	24,707	27,764	27,571	△0.7	19.1
시 내	61,834	89,066	111,168	24.8	76.8
지정면세점	5,432	5,919	5,939	0.3	4.1
계	91,984	122,757	144,684	17.9	100.0

자료 : 관세청

2017년 기준 면세점 유형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시내면세점이 약 11조원 규모로 전체의 7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출국장면세점이 2조7천억 원 규모로 전체의 19.1%로 위 두 유형의 면세점이 다른 종류의 면

세점에 비해 압도적인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은 2016년 대비 약 2조 2천억 원 증가하며 전년대비 24.8% 증가하며 면세점 전체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출국장 면세점과 지정면세점의 경우에는 매출변동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내면세점 이용객 증가 추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국내 사전면세점 유형별 매출액 역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관광객의 감소로 증가세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기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17.9%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 면세점 성장추이는 <표 2-26>과 같이 2011년 이후 연평균 18.4%로 매출액이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6> 국내 면세점 매출액 성장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1~12월
매출액	45,260	53,716	63,292	68,326	83,077	91,984	122,757	144,684

자료 : 관세청

2016년 및 2017년 기준 면세점 전체 매출액 중 국산품 판매는 각각 4조8천억 원 및 4조4천억 원으로 각각 39.7%, 3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품 판매는 각각 약 7조4천억 원과 10조 원으로 각각 60.3%, 69.4%를 차지하여 수입품 판매 비중이 국산품에 비해 높다.

하지만 과거 전체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이전에는 20%대 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7〉 국산품 매출액<sup>2)</sup>

(단위: 억원, %)

2016년			2017년		
전체 매출액	국산품 매출액	국산품 비중	전체 매출액	국산품 매출액	국산품 비중
122,757	48,717	39.7	144,684	44,218	30.6

자료 : 관세청

면세점 소재지 및 특허 만료일은 〈표 2-28〉과 같다.

〈표 2-28〉 면세점 소재지 및 특허만료일

면세점	소재지	특허만료일
동화외교관면세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211 광화문 빌딩	‘18.12.31
동화면세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211-1	‘20.12.23
롯데면세점(소공점)	서울 중구 을지로 30	‘20.12.22
롯데DF면세점(코엑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	‘17.12.31
롯데월드타워(잠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22.01.04
신라면세점	서울 중구 동호로 249 (장충동2가)	‘19.07.13
(주)두산(두타)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21.05.17
(주)신세계디에프	서울시 중구 퇴계로 77	‘21.05.17
에이치디씨 신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20.12.23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20.12.27
(주)에스엠면세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1.01.28
롯데면세점(부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19.09.27
(주)신세계조선호텔(부산)	부산 해운대구 센텀4로 15	‘21.2.28
롯데면세점(제주)	제주 제주시 도령로 83	‘20.06.18
신라면세점(신제주)	제주 제주시 노연로 69	‘19.10.24
진산면세점(울산)	울산시 중구 변영로 363	‘22.12.31
대동면세점(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21.06.02
신우면세점(대전)	대전시 유성구 온천로 27	‘22.12.31

2) 국산품 연도별 매출비중(%) : (‘13) 22.6 → (‘14) 31.0 → (‘15) 37.0 → (‘16) 39.7 → (‘17) 30.6

(주)스노마드(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22.12.31
중원산업(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114	‘17.12.31
그랜드관광호텔(대구)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59길 8-10	‘22.12.31
엔타스면세점(인천)	인천 연수구 청량로 120	‘19.12.10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21.02.04
(주)알펜시아	강원 평창군 대광령면 솔봉로 325	‘22.01.24
JTO국제컨벤션센터점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21.12.31
JDC제주공항면세점	제주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17.12.31
JDC제주항1면세점	제주 임항로 111	‘19.12.31
JDC제주항2면세점	제주 임항로 191	‘19.09.30

자료 : 관세청

대기업의 특혜와 독과점해결을 위하여 2013년 관세법 개정 이후 중소중견기업 특허비율<sup>3)</sup>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9> 기업구분별 면세점 특허 수·면적 및 매출 현황

(기준 : 2017년, 단위 : m<sup>2</sup>, 억원, %)

구 분	특허수	비율	특허 면적	비율	매출액	비율
대기업	18	37.5	167,572	76.6	129,790	89.7
중소·중견	27	56.3	45,369	20.7	9,425	6.5
공기업	3	6.3	5,844	2.7	5,469	3.8
합 계	48	100.0	218,785	100.0	144,684	100.0

자료 : 관세청

3)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특허비율 : [ '14 ] 18개(41.9%) ⇨ [ '15 ] 25개(53.2%) ⇨ [ '16 ] 29개(59.2%)  
⇨ [ '17 ] 27개(56.3%)

〈표 2-30〉 대기업 특허현황

운영 업체명	출국장		시내	특허수 (개)	특허 비율
	공항	항만			
롯데	3(인천, 김포, 김해)		5(서울3 부산, 제주)	8	16.0
신라	1(인천)		2(서울, 제주)	3	6.0
(주)두산(두타)			1	1	2.0
신세계	1(인천)		2(서울, 부산)	3	6.0
한화(제주)	1		1	2	4.0
HDC신라			1(서울)	1	2.0
상호출자 소계	6		12	18	36.0

자료 : 관세청

주요업체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4년 이전에는 롯데와 신라의 점유율<sup>4)</sup>이 80% 이상을 차지 하였으나, 차츰 감소하여 2015년 이후 점유율이 80%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70%이하로 감소하였다.

〈표 2-31〉 주요업체별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롯데	35,758	52.3	42,170	50.8	47,390	51.5	59,729	48.7	60,599	41.9
신라	20,904	30.6	25,376	30.5	25,888	28.1	30,082	24.5	34,489	23.8
신세계	1,593	2.3	2,602	3.1	3,512	3.8	9,608	7.8	18,344	12.7
JDC	3,450	5.0	3,666	4.4	4,882	5.3	5,407	4.4	5,469	3.8
동화	2,090	3.1	2,926	3.5	3,200	3.5	3,556	2.9	3,133	2.2
기타	4,531	6.6	6,337	7.6	7,112	7.7	14,375	11.7	22,650	15.7
전체 합계	68,326	100.0	83,077	100.0	91,984	100.0	122,757	100.0	144,684	100.0

자료 : 관세청

4) 롯데신라의 연도별 점유율 : 81.3%( ' 14)→79.6%( ' 15)→73.2%( ' 16)→65.7%( ' 17)

주요 기업구분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매장감소로 인하여 매출액이 하락하고 있고, 중소중견 기업과 대기업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32〉 주요 기업구분별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 억원, %)

구분	' 13		' 14		' 15		' 16		' 17.1~12월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대기업	60,221	88.1	73,398	88.3	80,297	87.3	107,802	87.8	129,790	89.7
중소중견	2,527	3.7	4,012	4.8	5,690	6.2	9,530	7.8	9,425	6.5
공기업	5,578	8.2	5,669	6.8	5,997	6.8	5,426	4.4	5,469	3.8
합계	68,326	100	83,077	100	91,984	100	122,757	100.0	144,684	100.0

자료 : 관세청

기업구분별 중소중견제품 면적 및 매출액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이 약 25%를 차지 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3〉 기업구분별 중소중견제품 면적 및 매출액

(단위 :㎡, 억원, %)

구분	특허 면적	매장 면적	중소중견		전체		중소중견제품	
			면적	비율	매출	비율	매출	비율
대기업	167,572	119,131	28,153	23.6	129,790	89.7	22,672	17.5
중소중견	45,369	26,904	7,900	29.4	9,425	6.5	1,513	16.1
공기업	5,844	2,981	708	23.8	5,469	3.8	1,520	27.8
전체	218,785	149,016	36,761	24.7	144,684	100.0	25,705	17.8

자료 : 관세청

지역별 면세점 현황을 살펴보면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모여있고, 출국장 면세점은 인천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 충남, 경북 등 수요가 적은곳이 대부분이다.

<표 2-34> 지역별 면세점 현황

지역	구분	업체명	만료일
서울 (13)	외교관(1)	동화외교관면세점	' 18.12.31
	시내 (10)	동화면세점	' 20.12.23
		호텔롯데	' 20.12.22
		호텔신라	' 19.07.13
		롯데월드타워	' 22.01.04
		(주)두산(두타)	' 21.05.17
		(주)신세계디에프	' 21.05.17
		롯데DF리테일	' 17.12.31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20.12.23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20.12.27
		(주)에스엠면세점	' 21.01.28
	출국장 (2)	호텔 롯데	' 21.08.12
		시티플러스	' 21.08.12
부산 (5)	시내 (2)	호텔롯데 부산	' 19.09.27
		(주)신세계면세점 부산점	' 21.02.28
	출국장 (3)	(주)부산면세점 부산항	' 22.07.26
		롯데면세점 김해공항	' 21.08.31
		듀프리면세점 김해공항	' 19.02.04
제주 (8)	시내 (3)	호텔롯데 제주	' 20.06.08
		호텔신라 신제주	' 19.10.24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 21.02.04

	출국장(1)	한화타임월드 제주공항	' 19.04.19
	지정 (4)	JDC 제주공항	' 17.12.31
		JDC 제주항 1호	' 19.12.31
		JDC 제주항 2호	' 19.09.30
		제주관광공사	' 21.12.31
인 천 (10)	시내(1)	엔타스면세점	' 19.12.10
	출국장 (9)	호텔신라 인천공항	' 20.08.31
		호텔롯데 인천공항	' 20.08.31
		신세계조선포털 인천공항	' 20.08.31
		에스엠 인천공항	' 20.08.31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 20.08.31
		엔타스듀티프리 인천공항	' 20.08.31
		삼익악기 인천공항	' 20.08.31
		엔타스듀티프리	' 19.12.31
탑시티	' 20.12.31		
대 구 (2)	시내(1)	그랜드관광호텔	' 22.12.31
	출국장(1)	그랜드호텔 대구공항	' 20.09.15
대 전 (1)	시내(1)	신우산업	' 22.12.31
울 산 (1)	시내(1)	진산선무	' 22.12.31
경 기 (1)	시내(1)	스노마드(호텔양코르)	' 22.12.31
경 남 (1)	시내(1)	대동백화점	' 21.06.02
충 북 (3)	시내(1)	중원산업	' 22.12.31
	출국장(2)	(주)시티플러스 청주공항	' 19.12.30
		(주)모듈트레이테크널러지	' 19.12.30
전 북 (1)	출국장(1)	G.A.D.F면세점 군산항	' 22.05.09
전 남 (1)	출국장(1)	국민산업 무안공항	' 20.05.08
강 원 (1)	시내(1)	(주)알펜시아	' 22.01.24
* 시내면세점 없는 지역 : 광주,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자료 : 관세청

2012년 이후 정책변화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이 추진되었다.

<표 2-35> 중소기업 신규특허 추진현황

구분	일자	추진 경과
1차 사전승인 (9개업체)	' 12.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 지역별 1개 업체 신규특허 공고 → 12개 지역 27개 업체 신청 → 9개 지역 승인*</li> <li>* 승인(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인천, 전남, 경북) 탈락(광주, 강원, 전북), 미신청(충남)</li> </ul>
2차 사전승인 (2개업체)	' 13. 0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지역 대상 2차 공고 → 3개 업체 신청 → 2개 지역 승인*</li> <li>* 승인(충남, 강원), 탈락(전북), 미신청(광주)</li> </ul>
사전승인 반납 (4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업체 반납</li> <li>- 경북(서희건설, ' 13.01.10), 전남(로케트전기, ' 13.03.4)</li> <li>인천(인천송도면세점, ' 13.04.26), 강원(대명레저, ' 13.06.20)</li> </ul>
특허 및 영업개시 (12개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개 업체 영업개시*및 신규특허**</li> <li>* 울산(' 13.06.28), 경남(' 13.07.25), 대전(' 13.09.26), 대구(' 13.10.05), 수원(' 13.12.24), 충북(' 14.01.28), 인천(' 15.05.11), 서울(' 16.01.29), 제주(' 16.02.05), 강원(' 17.01.25)</li> <li>** 서울·부산(' 16.12.23)</li> </ul>
특허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업체 반납</li> <li>- 충남(코리아면세점, ' 17.04.24)</li> </ul>

자료 : 관세청

〈표 2-36〉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영업(개시준비) 현황

지역	업체명	업종	설치 장소	비고
대구	그랜드관광호텔	호텔업	대구시 수성구 그랜드호텔內	' 13.10.5 영업개시
대전	신우산업	금속제조업	대전시 유성구 아드리아호텔內	' 13.09.26 영업개시
울산	진산선무	기계장비도매	울산시 중구 번영로 363	' 13.06.28 영업개시
경남	대동백화점	백화점	창원시 의창구 디스티세븐內	' 13.07.25 영업개시
경기	호텔앙코르	호텔업	수원시 팔달구 앙코르호텔內	' 13.12.24 영업개시
충북	중원산업	호텔업	청주시 상당구 라마다호텔內	' 14.01.28 영업개시
인천	엔타스	요식업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8-3	' 15.05.11 영업개시
서울	탑시티면세점	도매업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 16.12.23 신규특허
부산	부산면세점	도매업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1-2 용 두산공원 전시동	' 16.12.23 신규특허
강원	(주)알펜시아	임대업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명 솔봉로 325	' 17.01.25 영업개시

자료 : 관세청

전 세계 면세점시장 국가별 매출액 및 점유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1위 임을 알수 있다. 기업순위<sup>5)</sup>는 국내의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2위와 5위로 자리잡고 있다.

〈표 2-37〉 세계 면세점시장 국가별 매출액 및 점유율현황

(2016 Generation Research, 단위 : USD Million, %)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국가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독일	UAE	홍콩	태국	싱가폴	일본
매출	10,934	4,702	3,913	3,273	2,829	2,694	2,162	1,950	1,821	1,750
점유율	17.2	7.4	6.2	5.2	4.5	4.2	3.4	3.1	2.9	2.8

자료 : 관세청

5) 기업 순위(‘16 Moodie Report) : 스위스 Dufry(1위), 롯데(2위), 미국 DFS(3위), 신라(5위)

〈표 2-38〉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 비교

종 류	보세 판매장 (사전 면세점)	사 후 면 세 점	지 정 면 세 점
관 련 법 령	관세법 제196조 관세법 제17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내지 제4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
지 정 (특 허)	세관장(특허)	세무서장(지정)	제주세관장(지정)
이 용 자 격	출국인, 환승객, 주한외교관	외국인관광객	19세 이상 & 제주도 여행객 (제주도민 포함)
구 매 한 도	외국인: 제한 없음 내국인: USD 3,000	○ 제한 없음 (1회 판매가 3만원 미만시 비적용) ※ 즉시환급대상 구매한도 - 건당 3만원 ~ 20만원 - 총액 100만원 이내	1회 600\$이하 년간 6회
판 매 조 건	출국인: 국외 반출 외교관: 외교관사용	국외 반출	제주도의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반출
판 매 가 격	세전 가격	세포함 가격	세전 가격
면 세 종 류	관세, 내국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내국세
면 세 시 기	판매시점	국외반출시점(사후환급) 물품판매시점(즉시환급)	판매시점
내 국 물 품 제 세 환 급 (영 세 율)	보세판매장 반입 세관장확인	국외반출 세관장확인	지정면세점 반입 세관장 확인
설 치 현 황	44개 ( '17.1~12월말 현재)	17,000개 ( '17.1~12월말 기준)	4개 ( '17.1~12월말 현재)

자료 : 관세청

<표 2-39> 우리나라 면세점 특허경과

- 1964년 11월 주한외국인에게 면세품 판매를 위한 특정 외래품 판매소인 한남체인을 운영
- 1967년 한국관광공사, 김포공항에 면세점 개설
- 1969년 경남 외래품판매공사, 세운식품 무역(주), 서진통상(주), 1971년 신세계물산(주), 1973년 코스모스양행(주), 1974년 외국인 상사, 보광개발(주) 등 개점
- 1975년 외교관전용 면세점 개점
- 1979년 롯데면세점과 동화면세점, 서울에 시내면세점 개점
- 1983년 한진관광, 제주에 한진 면세점을 개점(2003. 6. 폐업)
- 1986년 파고다쇼핑, 코리아 다이아몬드, 한진관광, 호텔신라, 파라다이스투자개발 남문, 풍전 등 개점
- 1987년 경주 남문면세점, 부산 동화면세점, 경주 동화면세점 개점
- 1989년 서울 롯데월드, 제주 동화면세점, 제주 신라면세점 개점
- 1992년 서울 위커힐 면세점, 1995년 부산 롯데면세점 개점
- 1995년 제주 동화, 1998년 경주 동화, 1999년 부산 동화면세점이 차례로 폐업
- 2000년 제주 롯데 면세점, 서울 COEX 면세점 개점
- 2002년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신규 지정(JDC)
- 2003년 파라다이스 경주, 한진 제주·서울 시내면세점 경영적자로 폐업
- 2009년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신규 지정
- 2012년 중소·중견기업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진
- 2015년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특허 추진
- 2016년 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진
- 2017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신규특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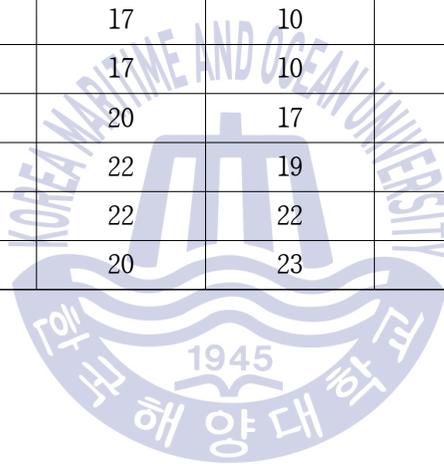
자료 : 한국면세점협회

〈표 2-40〉 연도별 종류별 특허업체수

연도	외교관	출국장	시내	지정	계
'64	-	1	-	-	1
'67	-	2	-	-	2
'71	-	3	-	-	3
'73	-	3	-	-	3
'75	1	3	-	-	4
'79	1	3	2	-	6
'80	1	3	2	-	6
'81	1	3	2	-	6
'82	1	4	2	-	7
'83	1	4	4	-	9
'84	1	4	6	-	11
'85	1	4	6	-	11
'86	1	4	13	-	18
'87	1	4	19	-	24
'88	1	4	28	-	33
'89	1	4	29	-	34
'90	1	5	28	-	34
'91	1	5	23	-	29
'92	1	5	22	-	28
'93	1	5	22	-	28
'94	1	5	18	-	24
'95	1	5	17	-	23
'96	1	5	16	-	22
'97	1	5	11	-	17
'98	1	6	12	-	19
'99	1	8	11	-	20
'00	1	8	13	-	22
'01	1	11	13	-	25

연도	외교관	출국장	시내	지정	계
‘02	1	13	13	1	28
‘03	1	14	13	1	29
‘04	1	16	10	1	28
‘05	1	16	10	3	30
‘06	1	16	10	3	30
‘07	1	17	10	3	31
‘08	1	16	10	3	30
‘09	1	14	10	4	29
‘10	1	15	10	4	30
‘11	1	17	10	4	32
‘12	1	17	10	4	32
‘14	1	20	17	5	43
‘15	1	22	19	5	47
‘16	1	22	22	4	49
‘17	1	20	23	4	48

자료 : 한국면세점협회





## 제 3 장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실태 조사

### 3.1 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갱신제도와 신고제도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운영업체, 유관기관, 관세청공무원(보세판매장 담당경험有)을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동년 4월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 우리나라 전체 면세점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53개의 설문지를 접수하여 이를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응답 기업에 관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직업은 관세청(세관)공무원자이 9.4%, 보세판매장 종사원은 71.7%이고 보세판매장 유관기관 직원은 13.2%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직급은 사원이 18.9%, 대리 및 과장이 45.3%, 차장 및 부장이 17%, 이사 및 상무가 5.7, 사장이 1.9%로 응답자의 직급은 주로 중관관리자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가 1.9%, 30대가 28.3%, 40대가 56.9%, 50대 이상은 11.3%로 40대 이상이 68.2%로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근무기간은 3년미만 13.2%, 3년~10년 미만은 24.5%, 10년~20년 미만은 34%, 20년 이상이 20.8%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보세판매장 종사원이 근무하는 기업의 보세판매장 종사자수는 100명 미만은 18.2%(유효값중),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은 31.8%(유효값중),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22.7%(유효값중), 1000명이상이 27.3%(유효값중)로 나타났다.

<표 3-1> 설문 응답기업 및 응답자의 특성

응답기업 특성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직업	관세청(세관)공무원	5	9.4	10.0
	보세관매장 종사원	38	71.7	76.0
	유관기관 직원	7	13.2	14.0
	미표기	3	5.7	
	합 계	53	100.0	100.0
연령	20대	1	1.9	2.0
	30대	15	28.3	29.4
	40대	29	54.7	56.9
	50대	6	11.3	11.8
	미표기	2	3.8	
	합 계	53	100.0	100.0
직급	사원	10	18.9	21.3
	대리,과장	24	45.3	51.1
	차장,부장	9	17.0	19.1
	이사,상무	3	5.7	6.4
	사장	1	1.9	2.1
	미표기	6	11.3	
	합 계	53	100.0	100.0
종업원수	100명 미만	4	7.5	18.2
	100명이상~500명미만	7	13.2	31.8
	500명이상~1000명미만	5	9.4	22.7
	1000명 이상	6	11.3	27.3
	미표기	31	58.5	
	합계	53	100.0	100.0
근무기간	3년 미만	7	13.2	14.3
	3년~10년 미만	13	24.5	26.5
	10년~20년 미만	18	34.0	36.7
	20년 이상	11	20.8	22.4
	미표기	4	7.5	
	합계	53	100.0	100.0

### 3.2 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인식에 대한 실태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인식에 대한 실태는 <표 3-2>와 같다. <표 3-2>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특허기간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인식에 대한 실태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적 으로 그렇다	합계 (%)	평균 (7점 척도)	표준 편차
특허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6 (11.3)	10 (18.9)	11 (20.8)	13 (24.5)	9 (17.0)	4 (7.5)	0 (0)	53 (100)	3.4	1.46
선정절차 만족도	5 (9.4)	9 (17.0)	9 (17.0)	15 (28.3)	11 (20.8)	4 (7.5)	0 (0)	53 (100)	3.57	1.42
특허기간 만족도	27 (50.9)	12 (22.6)	7 (13.2)	4 (7.5)	2 (3.8)	1 (1.9)	0 (0)	53 (100)	1.96	1.27
보세판매장수 적정성	9 (17.0)	20 (37.7)	10 (18.9)	8 (15.1)	3 (5.7)	2 (3.8)	1 (1.9)	53 (100)	2.79	1.47
보세판매장수 과다	0 (0)	4 (7.5)	2 (3.8)	9 (17.0)	6 (11.3)	21 (39.6)	11 (20.8)	53 (100)	5.34	1.47

또한 보세판매장 개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 3.3 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방향 인식에 대한 실태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개선방향 인식에 대한 실태는 <표 3-3>과 같다. <표 3-3>을 살펴보면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서 특허기간을 갱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간 갱신제도는 고용안정, 경쟁력유지,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갱신제도는 기존업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대한 인식 실태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합계 (%)	평균 (7점 척도)	표준 편차
현재의 특허를 갱신하는 방향	0 (0)	4 (7.5)	0 (0)	1 (1.9)	5 (9.4)	17 (32.1)	26 (49.1)	53 (100)	6.06	1.38
갱신제도의 고용안정성보장	1 (1.9)	2 (3.8)	0 (0)	0 (0)	4 (7.5)	15 (28.3)	31 (58.5)	53 (100)	6.26	1.30
갱신제도의 기업경쟁력유지	1 (1.9)	3 (5.7)	0 (0)	3 (5.7)	5 (9.4)	18 (34.0)	23 (43.4)	53 (100)	5.91	1.47
갱신제도의 기업투자확대	1 (1.9)	2 (3.8)	2 (3.8)	3 (5.7)	7 (13.2)	15 (28.3)	23 (43.4)	53 (100)	5.83	1.49
갱신제도의 기존업체유리	1 (1.9)	1 (1.9)	2 (3.8)	9 (17.0)	12 (22.6)	20 (37.7)	8 (15.1)	53 (100)	5.30	1.31

	1 (3년)	2 (5년)	3 (10년)	4 (15년)	5 (20년)	합계 (%)	평균 (7점 척도)	표준 편차
적정갱신주기	0(0)	4 (7.5)	38 (71.7)	7 (13.2)	4 (7.5)	53 (100)	3.21	0.68

	1 (1)	2 (2)	3 (3)	4 (4)	5 (무제한)	합계 (%)	평균 (7점 척도)	표준 편차
적정갱신횟수	6(11.3)	3 (5.7)	16 (30.2)	3 (5.7)	24 (45.3)	53 (100)	3.74	1.43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의 실태는 <표 3-4>와 같다. <표 3-4>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선하는 방법은 조금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제도로 전환은 무분별한 보세판매장 난립으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과열경쟁으로 인해 도산업체가 발생하고, 일부대기업이 독점할 우려가 나타났다.

<표 3-4>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를 신고제로 개선에 대한 인식 실태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적 으로 그렇다	합계 (%)	평균 (7점 척도)	표준 편차
현재의 특허를 신고제로 전환	12 (22.6)	13 (24.5)	6 (11.3)	6 (11.3)	8 (15.1)	6 (11.3)	2 (3.8)	53 (100)	3.21	1.87
신고제도로 신규기업참여	10 (18.9)	9 (17.0)	7 (13.2)	14 (26.4)	6 (11.3)	7 (13.2)	0 (0)	53 (100)	3.34	1.66
신고제도로 자유로운경쟁	10 (18.9)	10 (18.9)	8 (15.1)	11 (20.8)	4 (7.5)	7 (13.2)	3 (5.7)	53 (100)	3.42	1.85
신고제도로 경쟁력강화	8 (15.1)	10 (18.9)	15 (28.3)	5 (9.4)	5 (9.4)	4 (7.5)	6 (11.3)	53 (100)	3.47	1.89
신고제도로 시장질서교란	0 (0)	1 (1.9)	3 (5.7)	10 (18.9)	7 (13.2)	17 (32.1)	15 (28.3)	53 (100)	5.53	1.33
신고제도로 과열경쟁심화 도산업체발생	1 (1.9)	0 (0)	2 (3.8)	7 (13.2)	8 (15.1)	14 (26.4)	21 (39.6)	53 (100)	5.77	1.36
신고제도로 대기업독점강화	2 (3.8)	6 (11.3)	2 (3.8)	14 (26.4)	8 (15.1)	12 (22.6)	9 (17.0)	53 (100)	4.74	1.71

설문에서 향후 바람직한 보세판매장 제도에 대한 응답에서 <표 3-5>와 같이 현재 특허제도에 특허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보세판매장 개선 방향인식 실태

	1 (갱신제도)	2 (신고제도)	3 (현재제도유지)	4 (특허수수료 경매제)	미응답	합계 (%)
향후 바람직한 보세판매장제도	44 (83.0)	6 (11.3)	2 (3.8)	0 (0)	1 (1.9)	53 (100)



## 제 4 장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1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국내의 정책동향 및 문제점

#### 4.1.1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국내의 정책동향

2013년 이후 보세판매장이 일부 대기업이 독점적 이익을 누린다는 사회비판과 함께 독과점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도를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이 급변하면서 규제가 대폭강화 되고 있다.

<표 4-1> 국내 보세판매장 정책변화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총 특허수의 60% 이상 특허불가
- ②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특허수의 30% 이상 의무화
- ③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5년, 중소중견기업 외에는 갱신불가
- ④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율을 상향

자료 : 정재완, 우리나라 면세점(보세판매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6

〈표 4-2〉 보세구역별 특허절차 비교

구분	보세판매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특허신청	관세청장 공고시	사업자가 원할 때	사업자가 원할 때	사업자가 원할 때	사업자가 원할 때
심의	특허심사 위원회	특허심사 위원회	특허심사 위원회	특허심사 위원회	특허심사 위원회
특허기간	5년이내	10년이내	10년이내	10년이내	10년이내
갱신여부	불허, 단 중소기업1회 허용	갱신가능	갱신가능	갱신가능	갱신가능
특허권자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관세청장 사전승인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특허수수료	매출액 기준	면적기준	면적기준	면적기준	면적기준

자료 : 정재완, 우리나라 면세점(보세판매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6

#### 4.1.2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

2013년 관세법 개정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첫째 특허기간 단축으로 사업 영속성이 불확실하여 기업이 적극적 투자에 미온적이게 되었다. 둘째 특허기간 만료시 근로자 해고로 인한 종사원의 고용불안이 증대 되었고,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특허기간 만료시 기 투자시설 등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특허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불안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상반된다. 면세점은 관광서비스업으로 많은 여성을 비롯한 많은 근로자들의 좋은 일자리 이다. 5년마다 고용불안의 두려움에 쌓이게 해서는 안된다.

## 4.2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 4.2.1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확대

보세판매장은 다른 특허보세구역과 달리 특허성 논란이 점화되면서 규제위주의 2013년 관세법 개정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선행논문들을 연구하고,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보세판매장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역 및 세계 각 지역의 보세판매장과 경쟁적 위치에 있으며, 국제정세에 민감성에 따라 고위험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기간을 장기간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3장 설문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특허기간은 다른 특허보세구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10년으로 개선하고 특허기간 또한 갱신가능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2.2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규제완화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면세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전략보다 중장기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면세점에서 보듯이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면세산업을 국내시장만을 보면 과점적 구조로 일부 대기업이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것이라 보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기업이 더 적합한 업종이다.

면세시장은 국내 경쟁보다는 세계적 경쟁을 염두해 두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대기업의 특허수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특허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궁극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소재 스윗메이

솥처럼 대기업의 인지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 제 5 장 결론

### 5.1 연구의 결과 요약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은 2010년 이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은 규모 확대 및 규제완화로 경쟁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제도는 점점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있어 설문문을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국내 보세판매장 개별 점포와 보세판매장관련 유관기관, 보세판매장을 담당하였던 관세청(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여 설문 대상자의 신뢰성을 높였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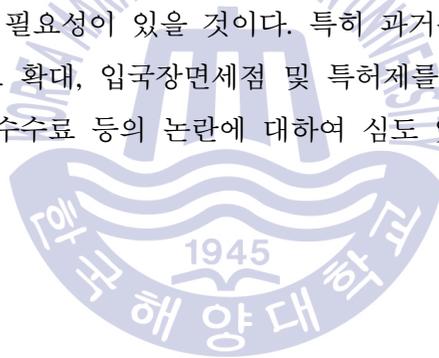
특허제도의 전반적 만족도는 다소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허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를 갱신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특허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결과는 갱신하는 방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특허기간 갱신제도의 도입이 고용안정, 경쟁력유지, 투자유치 등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그 동안 우리나라 보세판매장제도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허제도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발전과 업계의 투자확대, 고용안정 등에 기여하고 보세판매장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아쉬운 점은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허기간에 집중함으로써 다방면의 해결책을 제시 못한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 유럽 등은 면세점 확대와 대형화 등에 적극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에 집중되어 면세산업 발전에 해가 되었다. 향후에는 보세판매장관련 전반적인 제도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부터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면세점제도 확대, 입국장면세점 및 특허제를 신고제로 전환, 특허 경매제, 특허수수료, 송객수수료 등의 논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관세청, 면세점 제도 설명자료, 2017
- 관세청, 해외 면세산업 현황 및 제도, 2016
- 김영춘, 시내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 관세학회지, 2008
- 김탁용, 지역 중소중견면세점의 활성화 방안과 제도개선 제안, 면세산업활성화 세미나, 201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2016
-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면세산업 활성화 세미나, 2018
- 박경열, 국내 면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면세산업활성화 세미나, 2018
- 안승호, 면세산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 숭실대학교, 2018
- 이훈, 관광에서 본 면세산업 발전방향, 면세산업활성화 세미나, 2018
- 장유경, 면세점 종사원의 전문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17
- 전국경제인연합회,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 전창석, 서비스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세판매장(면세점) 이용 만족도에 관한 실증 연구, 관세학회지, 2011
- 정재완, 우리나라 면세점(보세판매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관세학회, 2016
- 정재완, 시내면세점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2012
- 정재완, 수출산업으로서 보세판매장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지, 2012

추신강, 면세산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 한국여행업협회, 2018

최영홍, 면세점산업 규제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면세산업활성화 세미나,  
2018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산업 발전 저해요인,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발전방향, 면  
세산업활성화 세미나, 2018

한국재정학회, 면세점제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14



## 부 록 A

### <설 문 조 사>

안녕하십니까?

귀회사 및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개인 및 회사의 응답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순수한 학술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평소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빠지는 문항 없이 대답해 주시어 보세판매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 년      월

연구자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남상호 (☎ 051-620-6342)

I. 다음 문항은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대한 귀사(귀하)의 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현시점에서 귀사(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연번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전적으로 그렇다	응답 (1~7)				
1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2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업체 선정방식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3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4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업체 선정절차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5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특허기간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6	7	
6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업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7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업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현재의 보세판매장 특허업체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9	현재의 보세판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0	현재의 보세판매장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1	현재의 보세판매장 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2	현재의 보세판매장 규모(면적)는 적정하다	1	2	3	4	5	6	7	
13	현재의 보세판매장 개설 지역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4	현재의 보세판매장 개설 지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II. 다음 문항은 앞으로의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귀사(귀하)의 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현시점에서 귀사(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연 번	설문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전 적 으 로 그 렇 다	응 답 (1~7)				
1	향후 보세판매장 특허는 현재의 특허를 갱신하는 방향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7	
2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제도의 도입은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1	2	3	4	5	6	7	
3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제도의 도입은 업체의 서비스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1	2	3	4	5	6	7	
4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제도의 도입은 업체의 신규서비스 개발과 투자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1	2	3	4	5	6	7	
5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제도의 도입은 기존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	2	3	4	5	6	7	
6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제도의 도입은 기존업체의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1	2	3	4	5	6	7	
7	향후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갱신주기는 몇 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8	향후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갱신회수는 몇 회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무제한								
9	향후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는 신고제도로 전환되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7	
10	보세판매장 신고제도 도입은 새로운 기업들의 보세판매장 시장 신규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	1	2	3	4	5	6	7	
11	보세판매장 신고제도 도입은 보세판매장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해 필요하다	1	2	3	4	5	6	7	

12	보세판매장 신고제도 도입은 보세판매장의 서비스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1...2...3...4...5...6...7	
13	보세판매장 신고제도 도입은 무분별한 보세판매장 난립으로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1...2...3...4...5...6...7	
14	보세판매장 신고제도 도입은 경쟁이 치열해져 도산하는 업체도 생길 수 있다	1...2...3...4...5...6...7	
15	보세판매장 신고제도 도입은 일부대기업에 시장이 독점될 것이다	1...2...3...4...5...6...7	
16	향후 바람직한 보세판매장 제도는? ① 특허갱신제도 도입 ② 신고제도 도입 ③ 현재 제도 유지 ④ 특허수수료 경매제		

Ⅲ. 다음 귀 회사 및 귀하에 대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 )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거나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연번	설문문항	응답
1	귀하의 직업은? ① 관세청(세관)공무원 ② 보세판매장 종사원 ③ 보세판매장 유관기관 직원	
2	귀 회사의 종업원수는? (보세판매장 종사원만 해당)	
3	귀 회사의 보세판매장 종사자수는? (보세판매장 종사원만 해당)	
4	귀 회사의 보세판매장 사업장수는? (보세판매장 종사원만 해당)	
5	귀 회사의 보세판매장 최근특허취득년도는? (보세판매장 종사원만 해당)	
6	귀 회사의 최초 특허취득년도는? (보세판매장 종사원만 해당)	
7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8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과장 ③ 차장,부장 ④ 이사,상무,전무 ⑤ 사장 이상	
9	귀하의 현 회사 근무기간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